규제영향분석서

# 보험업법 시행규칙

<목 차>

1.선임계리사 제도개선

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	이름	남명호
소관부처 및	담당부서 (과)	보험과	작	직급	사무관
작성자 인적사항	국장	권대영	성 자	연락처	02-2100-2963
	과장	이동엽		이메일	2080651@mail.go. kr

2021. 07. 01. 작성

정책책임자직위 성명 (서명)

# < 규제 개요 >

	1.규제사무명	선임계리사 제도	선임계리사 제도개선				
기본	2.규제조문	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, 제45조					
정보	3.위임법령	보험업법 제181조					
	4.유형	신설 <b>5.입법예고</b> 2021.07.05 ~ 202					~ 2021.08.16
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·복잡성이 증가하나, 선임계리사의 책임성·되 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					
규제의 필요성	7.규제내용 8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9.도입목표 및 기대효과	1)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・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 2)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토록 절차 강화 3)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 준수 4)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 보험회사  IFRS17 시행에 발맞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, 독립성 개선					
			E	비용	편 9	<u>1</u>	순비용
		피규제자					
	10.비용편익분석	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					
규제의 적정성	(단위:백만원)	주요내용					
	11.영향평가	기술영향평기	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기		향평가	가 중기영향평가	
	여부	해당없음	당없음		해당없음 해당없음		당없음
기타	12.일 몰 설 정 여부						
	13. 우선허용·						

사후 규제				
적용여부				
14.비용관리제	적용여부	비용	편익	연간균등순비용
(단위:백만원)	미적용	0	0	0

# 〈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보험계리사 등의 업무) 법 제	제44조(보험계리사 등의 업무)
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, 선임	
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	
다음 각 호와 <u>같다.</u>	같으며, 선임계리
	사는 제2호에 대한 검증 및 확인
	업무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의
	업무를 수행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1.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·확인에
	관한 사항
1. (생략)	<u>2</u> . (현행과 같음)
2. 책임준비금, 비상위험준비금 등	<u>3</u>
준비금의 <u>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</u>	<u>적립에 관한 사항</u>
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	
3. (생략)	<u>4.</u> (현행과 같음)
4. (생략)	<u>5</u> . (현행과 같음)
5. (생략)	<u>6</u> . (현행과 같음)
제45조(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)	계45조(서이게리사이 서이저扎 드)
① 법 제181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	
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	
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	
<u>거쳐</u>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	
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	
한다. 다만,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	
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	
치지 아니할 수 있다.	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⑥ 선임계리사의 최초 임기는 3년
	이상으로 하고, 선임계리사의 최초
	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
	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
	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른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⑦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
	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
	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한다. 단,
	질병, 승진 등으로 인한 사임의 경우
	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.

# 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####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□ 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·복잡성이 증가\*하나, 선임계리사의 책임성·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
  - \* 보험료,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·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

####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#### ① 대안의 비교

o 규제대안의 내용

성해오기아	대안명	선임계리사 업무범위, 선임 및 해임절차 현행유지		
현행유지안	내용	현재의 업무범위 및 선·해임절차 유지		
	대안명	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선임계리사 선		
		해임시 절차 명시		
규제대안1	내용	1) 업무로 계리적 최적가적 검증·확인 추가		
		2) 해임 시 이사총수의 2/3이상 찬성 필요		
		3) 재선임 시 절차 준수		
		4) 사임 시 이사회에서 사임의사와 사유 보고		
그레데아 대안명		선임계리사의 업무 명확화		
규제대안2	내용	업무로 게리적 최적가적 검증·확인 추가		

# o 규제대안의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현행유지안	선임계리사 업무부담 감소	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책임 현행유지 독립적인 업무수행 불가능
규제대안1	선임계리사의 권한, 책임이 강화 되고 독립적인 검증 가능	선임계리사 업무부담 증가
규제대안2	선임계리사의 권한 강화	독립적인 업무수행 불가능

#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□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(\*18.11.27)하고 7차(\*21.6월)에 걸

쳐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계, 연구기관, 학계 등의 의견 수렴

\* 구성원 : 금융감독원 양 협회, 예금보험공사, 보험개발원 KDI,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등

####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- □ IFRS17 시행에 따라 계리업무의 복잡성·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선임계리사의 책임성·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
  - **현행유지안**으로는 **선임계리사 업무**가 불명확하며, **임기보장**이 어려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
  - 규제대안 2는 선임계리사의 업무는 명확히 할 수 있지만 독립성 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
- ⇒ 계리적 최적가정의 산출·검증,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정성 확인 등에 대한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규제대안1이 필요

#### 3. 규제목표

□ IFRS17의 안정적 도입·운영을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

# Ⅱ. 규제의 적정성

-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- □ 보험회사가 이미 고용·계약하고 있는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
  -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비용발생 없으며,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 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·독립적으로 수행하 여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에 따른 편익이 큰 것 으로 판단됨

##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	영향평가	
기술	경쟁	중기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#### 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
-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

# - 중기영향평가

	중소기업에	해당하는	보험회사는	없음
--	-------	------	-------	----

### o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- □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않음
- 일몰설정 여부
  - □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일몰설정 불가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여부
- □ 선임계리사의 권한·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적용

#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o 해외사례
□ 해당사항 없음
o 타법사례
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(준번감시인의 임면 등) 제3항* 등에서 정한바와 유사하게 선임계리사 선·해임조건을 강화
* ③ 금융회사(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)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Ⅲ. 규제의 실효성
1. 규제의 순응도
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□ 금감원, 보험협회 등 <b>관계기관 협의</b> 등을 거쳐 <b>도출</b> 한 방안으로 기 <b>협의된 사항</b> 임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o 행정적 집행가능성
□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음
o 재정적 집행가능성
□ 예산집행내용 없음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1. 추진 경과
□ 7회에 걸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정한 개

정안으로 특이사항 없음

#### 2. 향후 평가계획

□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

#### 3. 종합결론

□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·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 가능